

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정이유

-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파주시에서 설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동 시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로부터 처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하천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은 시장이 하되,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(안제3조제1항)
- 나.처리시설에서는 신고대상시설규모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신고대상규모이상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(안제4조2항)
- 다.축산폐수를 수집·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뇨 등 수집·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.
- 라.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수집·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정함(안제9조제1항)

마.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하였거나 신고대상시설규모미만의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.(안제 11조제1항)

□ 검토의견

- 동 제정조례안은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8월 완공예정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

제30조 (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외의 소규모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

- 동 조례안중에서 다음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

첫째, 동 시설물의 관리운영 계획과 (시 직영시 인력 확보방안)

둘째, 동 조례안 11조에 의하면 신고대상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이를 시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 부담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.